

방배동 비닐하우스촌 화재

1. 사고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비닐하우스촌 일대
- 화재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18:32분(진화: 19:54분)
- 발화장소 : 8동 서측벽
- 재산피해 : 부동산 9천만원,
동산 2억7천만원, 합계 3억6천만원
- 인명피해 : 없음
- 화재원인 : 환풍기 등 전기제품
과열로 추정

2. 일반 사항

본 하우스촌은 일명 “전원마을”이라 부르는 곳으로 지난 1980년 남태령고개 근처 개발제

한구역에 형성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며, 건물 구조는 조립식 앵글 원형 파이프 위 비닐 또는 펠트이고, 외벽은 합판등으로서 전체가 화재에 극히 취약한 가연재로 되어 있다.

사당역에서 과천으로 가는 남태령고개 간선 도로의 좌측편에 위치하고, 주위는 남측이 우신운수 버스종점이며, 북측은 주택, 서측은 간선도로이고, 남측은 공터 및 비닐가건물이 이따금 있다. 화재 당시 180가구 443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마을에서는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마을 전체가 주위 간선도로보다 약 2m 낮은 위치에 있다.



[사진1. 전소된 비닐하우스촌]

방배동 비닐하우스촌 화재

3. 화재 현황

7월 18일 저녁 6시 반 경에 하우스촌 중앙부에서 서측으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여름날의 오후였으므로 어둡지 않았으며 취침시간이 아니었으므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3개 동 90가구의 가연성 집기비품과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LP가스 용기에서 분출한 가스가 연소하면서 내뿜는 불길은 하늘로 30~40m 정도로 치솟았으나, 가스통의 폭발은 거의 없었다.

화재 발생 신고를 접한 소방서(펌프차 19대, 탱크차 21대, 구조대 6대, 구급차 3대, 기타 15대)에서 출동한 인원과 인근 군부대의 장병, 구청직원, 한전직원 등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 및 주변 교통 통제, 주민 통제 등을 담당하여 신속하게 진화하였다.

4. 목격자의 진술

비닐하우스에서의 화재로서 약 540평에 이르는 13개 동이 일부 불연성의 전기제품 등을 제외한 모든 것이 타버렸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지점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확보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목격자(L, H, P씨) 3인 중;

L씨(남, 24세)는 “회사에서 퇴근하여 다시 외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보니 J씨 집 우측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H씨가 소화기를 들고 나와 J씨 집에서 나오는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으며, 불이

부근의 다른 집으로 번졌다”고 하였으며,

H씨(남, 49세)는 “퇴근 후 머리염색을 하던 중 동네 아이들이 ‘불이야,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았으나, 이상이 없기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와 보니 J씨 집 주방 쪽에서 불꽃이 치솟고 있어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하였고,

P씨(여, 60세)는 당시 “저녁 준비를 하려고 집 앞 평상에 앉아 있는데 5동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기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 보니 불길이 보여 ‘불이 났다, 소방서에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자 동네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나왔으며, 처음 불꽃이 나온 것이 5동 두 번째 J씨 집 부근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5. 화재 원인 조사

화재 피해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비닐하우스라는 건물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소되어 버린 현장에서 소실의 강약이나 소실 방향, 소실 과정 등의 분별이 어렵고, 특이한 소실 흔적도 발견하기 어려워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발화부를 넓게 한정하여 발화원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배제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화재조사가 이루어졌다.

3인의 목격자가 진술한 말에 따라 J씨 집의 하우스 외벽에서 발화한 것으로 일치되므로 8동의 외벽 주위를 조사한 결과, 하우스 외부에는 기름보일러가 설치되고 기름탱크가 인접해 있었으며, 분리형 에어컨과 컴프레서, 냉온수기, 환기팬 등이 소설되거나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으

며, 그릇장이 소실함에 따라 떨어진 유리그릇들이 비닐장판 위에 상당량 깨어져 쌓여 있었다.

특히, 기름보일러 및 탱크는 주위의 다른 물품에 비해 많은 열을 받은 흔적이 있어 발화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난방용 기름보일러는 무더운 여름 날씨를 고려하면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제하였고, 또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에어컨은 사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발화기기로서 배제하되 배선 등 발화원으로서 가능성 있는 모든 물건은 채취하여 감식토록 하고, 남은 가능성으로서 환기팬이나 냉온수기의 배선들을 채취하여 단락흔적 등 발화 관련성이 있는 부위는 전문기관에서 시험하기로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얀 분말이 폭격자 H씨가 주장하는 소화기의 약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하였다.

발화부 주위를 정밀 조사한 결과, 건물 바닥에서의 발화 관련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바

닥 장판이 깨끗한 점으로 미루어 불장난에 의한 발화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촉진제 등을 이용한 방화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6. 소화설비

본 하우스는 불법으로 지어진 무허가 상태의 임시건물로서 정상적인 소화설비를 갖출 수가 없는 곳이므로 가연성 하우스에 불이 난 경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빈번한 화재를 대비하여 거주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비치한 소화기가 2개 발견되었으나, 호스 등은 소실되었지만 안전핀은 끼워져 있는 상태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진다.

7. 맷는말

본 화재는 금년 8월 5일 발생한 세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결과는 달리 불행 중 다행으로 여름날의 저녁 6시 30분 경에 발생하여 취침자가 없는 시각의 화재였으므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닐하우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업연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우리 모두 철저한 관심을 갖고 화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

— 정리: 위험관리센터 팀장 박창복



[사진2. 안전핀이 끼워진 상태의 소화기]